

2019년도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 산출기간 : 2019년 11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일반관리비)

2019년 11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난방.온수)

2019년 11월 01일 ~ 2019년 11월 30일(수도)

2019년 10월 08일 ~ 2019년 11월 07일(전기)

* 납부기한 :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 납부장소 : 하나은행 (333-910001-08904) ☎ 897-1111

국민은행 (390401-04-000333) ☎ 896-1856

신한은행 (140-006-643215) ☎ 897-1500

우리은행 (1005-201-986026) ☎ 264-0071

★ 카드 자동이체 : 각 해당 카드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금 주 : 죽전 건영캐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입금시 동, 호수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자동이체 세대는 은행마감시간 전까지 통장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이체 세대는 고지서에 은행명과 자동이체란 문구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규약 제70조(관리비등의 연체료)에 의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이 부과적용됩니다.(가산금=관리비*연체일/365*12%)

* 1,254세대 분양면적 : 185,550.70㎡

내대지마을 죽전건영캐스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1687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구:죽전1동 1182번지)

☎ 031) 897-3947, FAX 031) 897-7396

*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 : www.kv1254.or.kr (입주민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공 지 사 항 ◆

1. 관리비 납부안내

- 가. 관리비는 관리비 고지서가 본인 세대인지 확인 후 지정된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나.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시 동,호수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시고 자동이체세대는 고지서하단에 <은행명과 자동이체 됩니다>가 표기되오니 확인하시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전에 자동이체 통장계좌에 입금하셔야 됩니다.
- 다. 관리비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연체가산금 일할계산(가산금=관리비 × 연체일/365 × 12%)
 - ※ 전출입시 2~3일전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관리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일이 주말,휴일인 경우 미리 관리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2. 생활 폐기물 배출 안내

- 가. 각종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 쓰레기통에 넣어 주십시오. <재활용에 배출금지>
- 나. 침대배출시는 매트리스와 부속물(헤드,바디,틀)을 각각 분리하여 스티커를 부착해야만 수거합니다.
- 다. 이불,카펫 배출시 50cm X 50cm 크기로 자른 후 규격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 라.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마. 신문지, 책, 광고지 등은 수거용 마대에 폐지류 및 박스는 끈으로 묶어 배출 바랍니다.
- 바. 대형 폐기물(폐가구등)은 911경비상황실에 해당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꼭 납부하시고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는 CCTV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기 1m 이상의 폐가전제품은 1899-1769(용인시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무료 수거하오니 수거일을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확인하신 후 그 날짜에 맞추어 세대현관앞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폐형광등(깨지 마시고) 및 폐건전지, 폐식용유 수거함은 901동 처리장내에 비치하였으니 이용바랍니다.

3. 화재 예방을 위하여

- 가. 가스사용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시다.
- 나. 가스사용 후 외출시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금시다.
- 다. 외출 시 각종 전원 플러그를 꼭 뽑아 둡시다.
- 라. 라이터, 성냥, 인화물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시다.
- 마. 세대 소유 물품을 복도나 계단에 적치하시면 안됩니다.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 비상 통로를 막게 됩니다.)
- 바. 계단실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 놓으면 화재시 대피로 확보가 안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 사. 세대내에 설치된 자동식 소화기 및 감지기를 인테리어 작업시 위치 변경한 세대는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 생활 질서유지

-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개인의 편익을 지양하고 공동의 이익이 우선함을 목적으로 생활하셔야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가. 이웃끼리 서로 먼저 인사 합시다.
- 나. 발코니에서 화단으로 담배꽂초나 휴지 등 오물을 버리지 맙시다.
- 다. 공동 주택 내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개 짖는소리, 외출시 개목줄, 입마개 착용, 오물처리 필수)
- 라. 피아노나 오디오를 크게 틀거나, 고성방가를 하지 맙시다.
- 마. 실내에서는 조용히 걷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도록 교육합시다.
- 바. 아파트 벽면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지않도록 철저히 교육합시다.
- 사.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흔들거나 뛰는 일이 없도록하고 각종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않도록 교육합시다.
- 아. 입주민 차량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고 벽면 오염및 수목화단 보호차원에서 전면주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합시다. (오일이 새는 차량은 정비바랍니다.)

5. 소화기 보존에 대하여

각층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기는 화재시 최초 진압에 가장 빠른 소화수단입니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인해 소화기가 분사 및 분실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화기 분사로 인해 자녀들이 다칠수도 있으니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소화기를 가지고 장난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층에 소화기가 없는 곳은 바로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완강기(위급시 인명탈출용 로프)보존 및 전출시 인계인수에 대하여(3층~10층세대 해당)

소방법에 의하여 우리 단지는 3층부터 10층세대까지 각 세대마다 완강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각 층에 적합한 완강기를 세대에 지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급시에 이를 이용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각 세대에 지급되어 세대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시설물이오니 전출시 꼭 전입하는 세대에 인계하시고 전입하시는 세대는 전출세대로부터 중간관리비 인계인수와 함께 완강기를 꼭 확인하시고 인수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법상 매년 12월 정기종합정밀점검시 각 세대에 보관중인 완강기를 점검원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대는 완강기에 붙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전 세대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잘 아는 곳에 보관하시어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완강기 분실시 각 세대 책임으로 재 구입하셔야 하오니 전출,전입시 꼭 인계인수하시기 바랍니다.

7. 단지 내 안전주차안내

- 가. 폭우나 돌풍 예고시에는 자동차를 꼭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넘어지거나 기타 물건이 날아와 차량에 손상을 줄 우려가 높습니다.
- 나. 주차선외 이면 주차시는 기어를 꼭 중립에 놓고 차를 일직선으로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부착]
- 다. 주차선을 2칸을 차지하면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꼭 1개 주차면에만 바르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안될 경우 경고스티커 부착]
- 라. 장애자 주차선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주차선입니다(주차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모두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돌풍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요망]
- 마. 단지내에서 차량 운행시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맙시다.
- 바. 주차시는 꼭 전면주차를 해주시기 바라며, 5분이상 대기차량은 시동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8. 단지 내 각 동의 화재예방 및 비상계단에 적치를 제거안내

각 동의 방화문과 계단참에 있는 창문은 꼭 닫아 화재 발생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비상계단은 화재등 비상시에 주민들이 탈출하는 비상 통로입니다.

9. 승강기 사용료 안내 [단위:원]

전 출 입 시		세 대 공 사 시				근 거	
층 수 구 분		공 사 기 간				①2009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②2014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③2016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④2018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15층이하	16층이상	1일-3일	4일-7일	장기공사시			
250,000	350,000	100,000	200,000	8-15일	300,000		
				16-23일	400,000		
				24일이상	500,000		
※ 승강기의 잦은 고장및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부분 전출입시 1톤차량 이하만 무료, 1톤 차량 1대를 초과할 경우 15만원 사용료 부과 (2017.7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화장실 개보수및 화단철거시 승강기 사용료 10만원 부과							

* 승강기사용료는 반드시 납부한 후 전출입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10. 발코니 확장 안내

가. 발코니 확장 절차(비내력벽 철거 등)

- 해당 동 입주민의 1/2이상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수지구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입주민 주의사항

- 동의절차가 완료(수지구청 접수증 제출) 될때까지 발코니 확장공사를 금하며, 공사전에 필히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하자보수를 위해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와 계약 바랍니다.

다.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 (1) 대피공간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방화문 설치시 대피공간으로 인정됩니다.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은 제한 없습니다.
 - 3층이하는 설치 불필요

(2)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 샷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 방화유리등은 덧대어 설치 가능합니다.
- 샷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합니다.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 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라.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한도) 또는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 행사등이 제한됩니다.
- 결로, 누수 등 이웃집에 하자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방화문 개방, 비상구 폐쇄 등 장애물 적치, 변경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하여(소방파파라치)

가. 신고시기 : 2010. 7. 1.부터 시행

나. 신고대상 및 과태료(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방화문 개방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시 : 과태료 50 ~ 200만원
- 공용 복도 등에 장애물 적치 및 변경 행위시 : 과태료 30 ~ 100만원

다. 포상금을 노리고 공용복도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적치 등으로 신고를 당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고, 복도 등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금연구역 안내

단지만 금연구역은 다음과 같으니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이웃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안이라도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은 배관을 통해 이웃세대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 상당한 불쾌감을 일으키니 세대안에서의 흡연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놀이터 나. 관리동 다. 승강기앞, 계단 라. 지하주차장

13. 식용유등 폐유 배출 금지 안내

싱크대 하수구에 식용유 등 폐유를 배출하여 싱크대 하수관이 막혀 생활하수가 2층 세대로 역류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절대 배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골국은 겨울철에 잘 응고되어 하수관 막힘의 원인이 되오니 배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방법

- 가. 사골국 : 음식물쓰레기수거통에 배출
- 나. 사골뼈 :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
- 다. 폐 유 : 901동옆 폐기물 처리장에 수거통 비치

1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시행 안내

가. 종량제부과시작일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만큼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부과액 : 1kg당 68원
- 세대고유카드 분실시 재발급 비용 3,300원

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계 사용시 주의할 점

- 음식물쓰레기를 담았던 봉지까지 기계안에 버리면 수거를 하지 않으니 비닐은 따로 준비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 배출카드 분실시 관리사무소에 꼭 연락주셔서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카드 재발급시에는 24시간 이후부터 사용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비밀번호 등록후 사용방법

- 카드없이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 비밀번호 등록 방법 : ① * ② 배출카드 태그 ③ 동/호수 확인 ④ 비밀번호 4자리 입력후 "확인"버튼 누름
- 비밀번호로 배출하는 방법 :
 - ① 확인버튼누름 ② 동입력 ③ 호수입력 ④ 비밀번호 4자리 입력후 "확인"버튼누름
 - ⑤ 투입구가 열리면 음식물쓰레기 투입후 "확인"버튼 누름
- 비밀번호를 등록한 기계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24시간 이후에는 다른 기계도 사용가능하오니 한대의 기계에만 비밀번호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내

전기차 충전기(급속2대)가 7단지 P2주차장 지하2층 기계실 입구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동 주차장에 일반태그용 전기차 콘센트(25구역 12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전기차 보유세대는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 휘트니스센터 운영 관리 안내

회원등록비는 당 아파트 휘트니스 위탁 운영 계약에 의거 부과(이체또는 관리비부과)되며, 수입금은 휘트니스시설 운영 인건비와 관리비(난방.온수.수도.전기)및 시설유지 제비용등 필요비용의 지출후 잔액은 관리외 수익으로 처리 됩니다.

■ 2019년 11월분 관리비등 수납현황 ■

1. 10월분 관리비 부과액 수납

구 분	부 과 액	수납금액	비 고
2019년 09월분	319,340,874	291,369,864	10월 31일 마감
2019년 09월분	319,340,874	294,420,884	10월 31일 마감

· 연체관리비 현황

(기준일 2019. 11. 30 현재)

구 분	연체금액	연 체 개 월 별		
		2개월이하	3개월	4개월이상
세대수	73	58	7	8
금	당월 27,971,010	12,984,580	2,034,970	12,951,460
액	전월 24,919,990	11,248,540	4,969,410	8,702,040
	증감 3,051,020	1,736,040	- 2,934,440	4,249,420

2. 예금잔고 현황

(기준일 2019. 11. 30 현재)

과목	금 융 기 관 별	계 좌 번 호	금 액	비 고
보통예금	하 나 은 행	333-910001-08904	252,872,211	관 리 비
	신 한 은 행	140-006-643215	8,386,260	관 리 비
	국 민 은 행	390401-04-000333	39,820,799	관 리 비
	우 리 은 행	1005-201-986026	4,396,727	관 리 비
	하 나 은 행	333-910002-00604	6,327,279	공사예치금
	하 나 은 행	333-910001-09504	66,394,663	잡 수 입
	하 나 은 행	333-910009-44804	29,608,164	휘트니스센터
	하 나 은 행	333-910009-58104	1,464,106	임주자대표회의운영비
정기예금	신 한 은 행	200-363-682168	30,000,000	임대보증금(만기일 '20.8.22)
	합 계		439,270,209	
장기수선충당예치금		1020-734-199618	193,375,964	우리는행('20.1.25)
		333-910209-48411	970,529,257	하나은행('20.3.7)
		333-910234-04011	760,061,280	하나은행('20.3.25)
		333-910234-94511	594,444,122	하나은행('20.4.12)
		200-469-812508	189,910,033	신한은행('20.6.10)
		333-910115-27521	280,986,840	하나은행-월적립('20.3.25)
		333-910008-03404	190,068,227	하나은행 수시입출금-공사용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합계			3,179,375,723	

3. 관리외 수입, 지출현황

(기준일 2019. 11. 30 현재)

구 분	전월잔액	금 월 발 생		합 계	
		내 용	금 액		
연체료수입	1,853,700	연체료 수입	207,920	2,061,620	
예 금 이 자	226,104	예금 이자	-	226,104	
광 고 수 입	7,300,000	광고 수입	700,000	8,000,000	
승강기수입	14,650,000	승강기사용수입	600,000	15,250,000	
기 타 수 입	16,097,600	소유주분	어린이집외 임대료	1,024,700	17,122,300
	17,564,639		장기수선충당예치만기이자	-	17,564,639
	39,886,590		기타입주자기여수입(승강기미디어)	253,150	40,139,740
	277,449,310	공동주택지원사업수익(시지원사업잔액)		-	289,544,456
		일자리 안정 자금 수익(경비.청소)		2,000,000	
		휘트니스센터 이용 수입		9,493,420	
		한전검침수당,관리비부과차액,도서연체료외		601,726	

관리외수입합계	375,027,943	관리외수입계	14,880,916	389,908,859
---------	-------------	--------	------------	-------------

관리외지출	283,171,562	재활용비용(분리수거수고비)		1,405,000	294,337,933
		재활용품 수거용품 외 회의실 정수기렌탈료 (경로당및탁구실포함)		928,200	
		자생 단체	경로당 지원금	500,000	
			꽃사모 월 지원금	300,000	
			휘트니스내 월지원금	300,000	
		도서관리자인건비(주민자치활동)		450,000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차감		2,000,000	
		휘트니스센터 운영 지출		5,283,171	
		특별지출 공동주택지원사업수입지출(한전및용인시)		-	
		기타의관리외비용(연체료 비용외)		-	
관리외지출계		11,166,371			

관리외비용합계	283,171,562	당 기 순 이 익	95,570,926
---------	-------------	-----------	------------

2019년 11월분 관리비 부과 총괄표

구분	과 목		전월발생액 〔A〕	당월발생액 〔B〕	전월대비증감 〔B-A〕	당월부과액 〔C〕	부과차액 〔C-B〕	
2020 관리비	1.	일 반 관 리 비	43,511,150	43,511,150	-	43,514,460	3,310	
	2.	경 비 비	45,181,710	45,181,710	-	45,181,860	150	
	3.	청 소 비	33,098,110	33,234,600	136,490	33,235,080	480	
	4.	소 독 비	1,041,650	1,041,650	-	1,041,120	-530	
	5.	수 선 충 당 금	10,016,650	-	-10,016,650	-	-	
	6.	위탁관리수수료	612,310	612,310	-	612,720	410	
	7.	승강기 유지비	1,875,500	1,875,500	-	1,876,620	1,120	
	8.	관리비 차감 적립금①	-2,099,030	-2,099,030	-	-2,100,060	-1,030	
	8-1. 일자리안정자금수익 차감 ②		-2,000,000	-2,000,000	-	-2,000,880	-880	
	합 계		131,238,050	121,357,890	-9,880,160	121,360,920	3,030	
개 별 사 용 료	9. 전 료	기	세 대 전 기 료	46,797,600	44,965,750	-1,831,850	44,965,750	-
			송변전지원금	-7,952,196	-7,952,196	-	-7,952,196	-
			T V 수 신 료	3,007,500	3,015,000	7,500	3,015,000	-
			승 강 기 전 기	3,055,920	3,324,140	268,220	3,324,140	-
			공 동 전 기 료	11,691,970	13,754,964	2,062,994	13,753,380	-1,584
			어 린 이 집	133,620	116,850	-16,770	116,850	-
			테 니 스 장	138,440	194,280	55,840	194,280	-
			휘트니스센터	816,150	626,090	-190,060	626,090	-
			LG 유플러스	171,160	171,160	-	171,160	-
			우 리 은 행	74,200	60,400	-13,800	60,400	-
			국 민 은 행	79,000	59,400	-19,600	59,400	-
			KEB하나은행	68,000	87,200	19,200	87,200	-
			신 한 은 행	78,000	59,200	-18,800	59,200	-
			기 남 방 송	60,000	60,000	-	60,000	-
	합 계		58,219,364	58,542,238	322,874	58,540,654	-1,584	
	10. 요 금	난 방 비	세대난방비	14,869,470	59,804,010	44,934,540	59,804,010	-
			어 린 이 집	27,700	155,190	127,490	155,190	-
			휘트니스센터	-	-	-	-	-
			소계	14,897,170	59,959,200	45,062,030	59,959,200	-
		급 탕 비	세대급탕비	26,644,200	35,668,050	9,023,850	35,668,050	-
			어 린 이 집	26,400	38,000	11,600	38,000	-
			테 니 스 장	16,500	15,200	-1,300	15,200	-
			휘트니스센터	122,100	117,800	-4,300	117,800	-
		소계		26,809,200	35,839,050	9,029,850	35,839,050	-
		기 본 난 방 비	세대기본요금	8,608,500	8,608,500	-	8,608,500	-
			어 린 이 집	14,460	14,460	-	14,460	-
			테 니 스 장	4,900	4,900	-	4,900	-
			휘트니스센터	83,440	83,440	-	83,440	-
		소계		8,711,300	8,711,300	-	8,711,300	-
		공 동 난 방 비		4,902,890	8,623,920	3,721,030	8,623,920	-
		합 계		55,320,560	113,133,470	57,812,910	113,133,470	-
		11. 수 도 료	세 대 수 도 료	31,874,050	32,603,830	729,780	32,603,830	-
			어 린 이 집	82,990	89,960	6,970	89,960	-
			테 니 스 장	9,860	6,270	-3,590	6,270	-
			휘트니스센터	172,240	152,060	-20,180	152,060	-
	합 계		32,139,140	32,852,120	712,980	32,852,120	-	
	12.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2,040,500	2,040,500	-	2,044,020	3,520	
	13.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275,000	275,000	-	275,880	880	
	14. 건물 보험료		1,885,520	1,578,880	-306,640	1,574,880	-4,000	
	15. 스프링쿨러손해보험료		37,700	37,700	-	38,280	580	
	16. 음식물폐기물수수료		1,419,180	1,548,180	129,000	1,533,300	-14,880	
	구분 장수	17. 장 기 수 선 충 당 금		31,220,760	31,220,760	-	31,223,700	2,940
	총 계		313,795,774	362,586,738	48,790,964	362,577,224	-9,514	
	18. 세 대 비 품 교 체 비		975,020	1,222,100	247,080	1,222,100	-	
19. 휘 트 니 스 센 터 이 용 료		2,705,000	4,920,000	2,215,000	4,920,000	-		
총 부 과 액		317,475,794	368,728,838	51,253,044	368,719,324	-9,514		

부과차액	-9,514
------	--------

1. 일반관리비

가. 사용내역

항 목		월 부과액	당월 사용액	잔 액	사 용 내 역	비 고
인건비	급여	31,468,150	31,468,170	401,900	▶관리사무소 직원 12명	
	건강보험	1,215,910	1,222,650	-41,060	▶임주자부담분	
	국민연금	840,350	714,350	2,291,355	▶임주자부담분	
	고용보험	525,590	366,010	2,221,790	▶임주자부담분	
	산재보험	842,730	526,500	2,898,820	▶임주자부담분	
	제수당	3,060,220	7,099,050	-13,158,260	▶자격.직책.방화수당	
			-	-1,033,210	▶연차수당충당금(별도 적립)	
	퇴직적립금	-	-	-	▶퇴직충당금(과 적립으로 인한 미 부과)	
	식대 및 복리후생비	1,349,830	304,050	976,390	▶공용부 작업시 간식및 음료. 설치원상여외. 기전실 열지원. 정기및 임시회의시 식대. 24시간근무자 특수검진진료비	
	관리용역부가세	1,007,740		-	▶ 135㎡ 초과평형 관리 용역 부가세	별도적립
소 계		40,310,520	41,700,780	-5,442,275		
제경비	여비교통비	3,600	-	34,600	▶내용없음	
	통신료	239,150	123,640	1,028,160	▶사무실 전화요금(4회선),승강기 비상통화용 1회선	
	우편료	29,750	2,770	117,060	▶업체 서류 발송료(한전외)	
	제세공과금등	5,210	-	-5,190	▶내용없음	
	일반사무용품비	452,400	300,210	1,289,340	▶프린터임대료. 복사용지.프린터기잉크수리.건전지 등	
	관리용(소모)품비	413,330	455,000	271,130	▶공용부화장실 휴지.불법폐기물처리스티커 구입등	
	도서인쇄비	487,540	253,000	1,784,110	▶전산비 및 고지서 인쇄비.	
	비품등구입비	166,670	2,633,840	-3,832,020	▶주간대기실 집기 구입(컴퓨터외)	
	공기구등구입비	250,000	-	1,495,000	▶내용없음	
	차량운반구	250,000	-	2,750,000	▶내용없음	
	차량유지비	242,400	95,880	312,390	▶보유 오토바이 및 트럭 차량 연료비	
	교육훈련비	58,910	46,000	21,010	▶2019 에너지관리자 법정 교육	
	피복비	137,500	317,100	463,100	▶동복 구입	
	회계감사비등	166,670	-	110,320	▶내용없음	
	잡비	297,500	378,700	-179,920	▶정수기렌탈료(5곳).컴퓨터 열 안내방송료.종이컵.자금대체수수료및 증명서발급수수료.작업음료및폐기물처리비등	
소 계		3,200,630	4,606,140	5,659,090		
합 계		43,511,150	46,306,920	216,815		

나. 면적별 부과액: 45,728,920원 (예산 548,746,980원/12개월 분할부과) - 퇴직적립금 미 부과로 인한 금액 감액

인건비	29,240,480 (발생금액) ÷	138,045.58 (부과면적) =	211.82 원/면적	(비과세)
인건비	11,070,040 (발생금액) ÷	47,505.12 (부과면적) =	233.03 원/면적	(과 세)
제경비	3,200,630 (발생금액) ÷	185,550.70 (부과면적) =	17.25 원/면적	(공 통)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229.07	25,690	396	10,173,240	비과세
139.023	229.07	31,850	330	10,510,500	
165.849	229.07	37,990	288	10,941,120	
197.938	250.28	49,540	240	11,889,600	과 세
합 계			1,254	43,514,460	3,310

2. 경 비 비

가. 용역 업체 : (주)911무인경비 (계약기간 : 2019. 9. 1. ~ 2022. 8. 31.)

나. 용역 계약 금액 : 44,948,990원 (예산 525,923,160원/12개월 분할부과- 135㎡ 이상 평형 과세 포함)

다. 면적별 부과 금액 : 45,181,710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0.3% 인상적용)

$$32,775,140 \text{ (발생금액)} \div 138,045.58 \text{ (부과면적)} = 237.42 \text{ 원/면적 (비과세)}$$

$$12,406,570 \text{ (발생금액)} \div 47,505.12 \text{ (부과면적)} = 261.16 \text{ 원/면적 (과 세)}$$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237.42	26,620	396	10,541,520	비과세
139.023	237.42	33,010	330	10,893,300	
165.849	237.42	39,380	288	11,341,440	
197.938	261.16	51,690	240	12,405,600	과 세
합 계			1,254	45,181,860	150

라. 용역대금 중 입퇴사자 4대 보험료 정산및 연차수당 발생시 정산후 용역비 지급 (정산제)

마. 재직자 및 퇴사자 4대 보험료 정산및 연차수당 지급 금액 공제후 부과 (총 14명 퇴사자 -명)

3. 청 소 비

가. 용역 업체 : (주)남경종합관리 (계약기간 : 2019. 01. 01.~ 2019. 12. 31.)

나. 용역 계약 금액 : 32,205,000원/월 (예산 386,460,000원 /12개월 분할부과 - 135㎡ 이상 평형 과세 별도)

다. 면적별 부과금액 : 33,098,110원

$$3,047,76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16.43 \text{ 원/면적 (공 통)}$$

$$21,798,720 \text{ (발생금액)} \div 138,045.58 \text{ (부과면적)} = 157.91 \text{ 원/면적 (비과세)}$$

$$8,388,120 \text{ (발생금액)} \div 47,505.12 \text{ (부과면적)} = 176.57 \text{ 원/면적 (과 세)}$$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174.34	19,550	396	7,741,800	비과세
139.023	174.34	24,240	330	7,999,200	
165.849	174.34	28,910	288	8,326,080	
197.938	193.00	38,200	240	9,168,000	과 세
합 계			1,254	33,235,080	480

※ 미화원 연차수당 대상자 7명, 퇴사자 1명 적립액 지급.

4. 소 득 비

가. 용역 업체 : (주)남경종합관리 (계약기간 : 2019. 01. 01.~ 2019. 12. 31.)

나. 용역 계약 금액 : 1,041,650원

다. 면적별 부과금액 : 1,041,650원 (예산 12,499,800원/12개월 분할부과)

$$1,041,65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5.61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5.61	630	396	249,480	
139.023	5.61	780	330	257,400	
165.849	5.61	930	288	267,840	
197.938	5.61	1,110	240	266,400	
합 계			1,254	1,041,120	- 530

5. 수 선 충 당 금

가. 면적별 예산 부과액: 10,016,650원 (예산 120,200,000원/12개월 분할부과)

나. 면적별 부과액 : 10,016,650원

$$-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	-	396	-	
139.023	-	-	330	-	
165.849	-	-	288	-	
197.938	-	-	240	-	
합 계				-	-

※ 수선충당금 월 사용내역 ※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시설유지비	11월분 원격점검 유지보수비(옴니시스템)		827,640			
	2019 소방종합정밀점검비용		2,750,000		용역업체 : 진진소방(주)	
	소 계		3,577,640			
재해예방비			-			
수 선 비	내 역		금 액		내 역	
	901동 아적장 전지목의 처리비(국제자원)		440,000		관리실 내 홀스크린 설치(인터넷)	
	803동 재활용장 CCTV 이전설치비용(911)		415,800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카도어행거)	
	다목적 사륜자동차 수리비용(한국모터)		462,000		백화제.보조손잡이.페인트.락가 구입	
	단지내벤치와 방부목 도색용 오일 구입		558,630			
	정.후문 A/S처리비용(뉴코리아)		165,000			
	소 계		2,484,730			
선급비용 대 체	2019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		5,368,440			
	소 계		5,368,440			
합 계			11,430,810		2019.11.30 수선충당금 잔액 10,742,670원	

6. 위탁관리수수료

가. 용역 업체 : 세화종합관리(주) (계약기간 : 2017. 12. 01. ~ 2020. 11. 30.)

나. 용역 계약 금액 : 612,310원

다. 면적별 부과액 : 612,310원 (예산 7,347,720원/12개월 분할부과)

$$612,31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3.30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3.30	370	396	146,520	
139.023	3.30	460	330	151,800	
165.849	3.30	550	288	158,400	
197.938	3.30	650	240	156,000	
합 계			1,254	612,720	410

7. 승강기유지비

가. 사용내역

내 역	금 액	비 고
승강기 유지 보수 용역비	1,875,500	신영승강기(주)
합 계	1,875,500	

나.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업체 : 신영승강기(주) (계약기간 : 2019. 05. 01. ~ 2020. 04. 30.)

다.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금액 : 1,875,500원

라. 면적별 부과액 : 1,364,000원 (예산 16,368,000원/12개월 분할부과)

$$1,875,50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10.11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월	비 고
112.130	10.11	1,130	396	447,480	
139.023	10.11	1,410	330	465,300	
165.849	10.11	1,680	288	483,840	
197.938	10.11	2,000	240	480,000	
합 계			1,254	1,876,620	1,120

8. 관리비 차감 (관리규약 제63조 3항에 의거)

가. 관리비 차감 금액 : 2,099,030원 (2018년 결산 처분에 의한 차감액 23,089,421원 ÷ 11개월 분할 관리비 차감 의결-11회차)

나. 면적별 부과차감액 : -2,099,030원

$$-2,099,03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11.31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11.31	-1,270	396	-502,920	
139.023	-11.31	-1,570	330	-518,100	
165.849	-11.31	-1,880	288	-541,440	
197.938	-11.31	-2,240	240	-537,600	
합 계			1,254	-2,100,060	- 1,030

8-1.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수익 차감

가. 고용안정자금 수익 (대상 : 911 보안실(관리대원외). 미화원)

나. 면적별 부과차감액 : -2,000,000 원

$$-2,000,000 \text{ (발생금액)} \div 185,550.70 \text{ (부과면적)} = -16.17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16.17	-1,210	396	-479,160	
139.023	-16.17	-1,500	330	-495,000	
165.849	-16.17	-1,790	288	-515,520	
197.938	-16.17	-2,130	240	-511,200	
합 계			1,254	-2,000,880	- 880

9. 전 기 료

가) 산출내역

(사용기간 : 2019. 10. 08. ~ 2019. 11. 07.)

구 분		사용량(kwh)	발 생 금 액	부 과 금 액	비 고
세 대 및 공 동		503,591	62,528,586	54,576,390	
			- 7,952,196		송변전 지원금
T V 수 신 료		-	3,015,000	3,015,000	50Kwh이상 사용 1,206세대
산 업 용		18,719	1,848,140	1,848,140	
가 로 등		3,122	396,520	396,520	
한 전 고 지 합 계		525,432	59,836,050	59,836,050	
세 대 전 기 료		382,055	44,965,750	44,965,750	
송 변 전 지 원 금		-	- 7,952,196	- 7,952,196	
T V 수 신 료		-	3,015,000	3,015,000	50Kwh이상 사용 1,206세대
① 소 계		382,055	40,028,554	40,028,554	세대별 부과
공 동	산 업 용	18,719	1,810,640	1,810,640	급수,소방펌프,웨트니스매션모니터수신료 15대 37,500원 공제
	가 로 등	3,122	396,520	396,520	가로등
	급탕난방동력	29,451	4,263,590	4,263,590	세대공급 급탕 난방 동력비
	지하주차장	17,178	2,486,840	2,486,840	지하주차장 전기사용
	대 기 실	508	73,540	73,540	주간대기실, 미화대기실
	기타공용	41,565	6,017,646	6,017,647	관리동,계단,E/V센서등외
	공용요금차감			- 518,323	주택분 0.9% (57,442,980원) 카드 할인
				- 775,490	통신사 중계기,LCD 모니터 임대 전기요금외 (알뜰장or도서관이용전기료포함)
② 소 계		110,543	15,048,776	13,754,964	
③ 승 강 기 전 기 료		22,964	3,324,140	3,324,140	
웨트니스센터 (999-101)		5,001	626,090	626,090	러닝머신 수신료 15대 37,500원 포함
어 린 이 집 (999-102)		1,418	116,850	116,850	교육용 전기 별도
테 니 스 장 (999-103)		1,342	194,280	194,280	사용량 * 1.15 (15% 가산부과)
LG유플러스(999-104)		778	171,160	171,160	월정금액
우 리 은 행 (999-106)		302	60,400	60,400	사용량 단가 200원
국 민 은 행 (999-107)		297	59,400	59,400	사용량 단가 200원
KEB하나은행(999-108)		436	87,200	87,200	사용량 단가 200원
신 한 은 행 (999-109)		296	59,200	59,200	사용량 단가 200원
기 남 방 송 (999-110)		-	60,000	60,000	월정금액
④ 소 계		9,870	1,434,580	1,434,580	
① - ④ 합 계		525,432	59,836,050	58,542,238	

내공동 전기 요금: 13,754,964원 (110,543Kwh)

13,754,964 [발생금액] ÷ 185,550.70 (부과면적) = 74.13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74.13	8,310	396	3,290,760	
139.023	74.13	10,310	330	3,402,300	
165.849	74.13	12,290	288	3,539,520	
197.938	74.13	14,670	240	3,520,800	
합 계			1,254	13,753,380	- 1,584

다승강기 전기료 동별 세대 부과 : 3,324,140원(발생금액)/22,964Kwh (사용량) = 144.77원/kwh

동호수	세대수	사용량	부과액	부과총액	동호수	세대수	사용량	부과액	부과총액
701 1/2	40	682	2,470	98,800	803 3/4	48	875	2,640	126,720
701 3/4	40	746	2,700	108,000	804 1/2	42	701	2,420	101,640
702 1/2	34	684	2,910	98,940	804 3/4	44	836	2,750	121,000
702 3/4	34	679	2,890	98,260	805 1/2	42	776	2,670	112,140
703	50	795	2,300	115,000	805 3/4	40	738	2,670	106,800
704	42	847	2,920	122,640	806 1/2	34	549	2,340	79,560
705 1/2	40	720	2,610	104,400	806 3/4	40	642	2,320	92,800
705 3/4	40	826	2,990	119,600	901	40	854	3,090	123,600
706 1/2	34	549	2,340	79,560	902 1/2	44	802	2,640	116,160
706 3/4	34	609	2,590	88,060	902 3/4	44	842	2,770	121,880
707	46	905	2,850	131,100	903	44	779	2,560	112,640
708	38	773	2,940	111,720	904 1/2	40	714	2,580	103,200
801	44	835	2,750	121,000	904 3/4	40	744	2,690	107,600
802 1/2	44	779	2,560	112,640	905 1/2	40	643	2,330	93,200
802 3/4	38	704	2,680	101,840	905 3/4	34	577	2,460	83,640
803 1/2	40	759	2,750	110,000	합 계	1,254	22,964		3,324,140

10. 열 요 금 (난방비,급탕비)

가산출내역

[사용기간 : 2019. 11. 01. ~ 2019. 11. 30.]

구 분		사 용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고지금액	지역난방공사	1,413.90cal		113,133,470	
	합 계			113,133,470	
난 방 비 (사용량)	세 대 분	810.93	73,900	59,804,010	원/Mwh당
	어 린 이 집	2.1		155,190	
	테 니 스 장	-		-	
	휘 트 니 스 센 터	-		-	
	소 계	-		59,959,200	
급 탕 비 (사용량)	세 대 분	9,405.00	3,800	35,668,050	원/Ton당
	어 린 이 집	10.0		38,000	
	테 니 스 장	4.0		15,200	
	휘 트 니 스 센 터	31.0		117,800	
	소 계	9,450.00		35,839,050	
기 본 요 금 (면적당)	세 대 분	185,550.70	46.40	8,608,500	원/㎡당
	어 린 이 집	311.70		14,460	
	테 니 스 장	105.70		4,900	
	휘 트 니 스 센 터	1791.00		83,440	
	소 계	187,759.10		8,711,300	
공동 난방비 (면적당)	공 동 사 용 분	185,550.70	26.11	8,530,620	
	어 린 이 집	311.70		14,320	
	테 니 스 장	105.7		4,860	
	휘 트 니 스 센 터	1791.00		74,120	
	소 계	187,759.10		8,623,920	
발생금액합계				113,133,470	

• 기본 요금 : 8,711,300원

$$8,711,300 \text{ (발생금액)} \div 187,759.10 \text{ (부과면적)} = 46.40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46.40	5,200	396	2,059,200	
139.023	46.40	6,450	330	2,128,500	
165.849	46.40	7,700	288	2,217,600	
197.938	46.40	9,180	240	2,203,200	
어린이집	311.70		1	14,460	
테니스장	105.70		1	4,900	
휘트니스센터	1791.00		1	83,440	
합 계			1,257	8,711,300	-

• 공동 난방비 : 8,623,920원

$$8,623,920 \text{ (발생금액)} \div 187,759.10 \text{ (부과면적)} = 45.93 \text{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45.93	5,160	396	2,043,360	
139.023	45.93	6,390	330	2,108,700	
165.849	45.93	7,620	288	2,194,560	
197.938	45.93	9,100	240	2,184,000	
어린이집		14,320	1	14,320	
테니스장		4,860	1	4,860	
휘트니스센터		74,120	1	74,120	
합 계			1,257	8,623,920	-

11. 수 도 료

가) 산출내역

(사용기간 : 2019. 11. 01 ~ 2019. 11. 30)

구 분		사 용 량	금 액	비 고
부과금액	수 도 사 업 소	28,664톤	32,852,120	- 상수도 요금 : 12,034,600원 - 하수도 요금 : 15,944,640원 - 물이용부담금 : 4,872,880원
사용량	세 대 분	27,598	32,603,830	
	공 동 사 용 량		-	
	위 트 니 스 센 터	130.0	152,060	
	어 린 이 집	56.0	89,960	
	테 니 스 장	6.0	6,270	
합 계		27,790	32,852,120	-

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가. 발생금액 : 2,040,500 원 /월

나. 부과금액 : 2,040,500 원/세대별 m² 12원 (예산 24,486,000원/12개월 분할부과)

다. 세대별 부과금액 : 1,630원 * 1,254세대

부과차익 3,520 원

▣ 운영비 11월 입출금 내역 ▣

월일	내 역	입 금	출 금	월 일	내 역	입 금	출 금	비 고
	전월이월	1,051,746		11/25	정기대표회의 참석비 (정기13-5만원)		650,000	11/22 (금)
11/10	11월분 운영비	2,040,500			용아연회비		30,000	
	대표회장 직책수당		500,000		정기회의시 음료		48,140	
	감사 2인 직책수당	(@15만 * 2인)	300,000		윤리운영교육비(3인)		30,000	운영총당금대체
	이사 1인 직책수당		100,000					
입금계	2,040,500	출금계	1,628,140	11월 30일 잔 액		1,464,106		

13.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가. 발생금액 : 275,000 원/월

나. 부과금액 : 275,000 원/세대별 m² 2원 (예산 3,300,000원/12개월 분할부과)

다. 세대별 부과금액 : 220원 * 1,254세대

부과차익 880 원

14. 건 물 보 험 료 (주택화재,시설물영업배상책임(메리츠화재),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DB생명))

가. 보험기간 : 2018.12.3 ~ 2019.12.3.

나. 보험 계약 금액 : 1,578,820원 (총금액 18,945,860원(다목적운반차 보험가입(' 19.1.10) W331,500포함)/12회 - 12회차)

다. 면적별 부과액 : 1,578,880원 (예산 18,614,360원(다목적차량 제외)/12개월 분할부과)

라. 면적별 부과액 : 1,885,580원 (승강기영업배상책임의무가입비 306,700원(~12/3 포함(10월분 포함 부과)

1,578,880 발생금액) ÷ 185,550.70 부과면적)

8.52 원/면적

면 적 [m ²]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8.52	950	396	376,200	
139.023	8.52	1,180	330	389,400	
165.849	8.52	1,410	288	406,080	
197.938	8.52	1,680	240	403,200	
합 계			1,254	1,574,880	- 4,000

15.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보험료(메리츠화재-시설물영업배상중 일부)

가. 보험기간 : 2018.12.3 ~ 2019.12.3.

나. 보험 계약 금액 : 37,700원 (총금액 452,440원/12회 - 12회차)

다. 면적별 부과액 : 37,700원 (예산 452,440원/12개월 분할부과)

37,700 발생금액) ÷ 48,986.09 부과면적)

0.77 원/면적

면 적 [m ²]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0.77	90	104	9,260	
139.023	0.77	110	90	9,800	
165.849	0.77	130	64	8,220	
197.938	0.77	150	74	11,000	
합 계			332	38,280	580

※ 15층이상 세대 부과

16. 생활(음식물)폐기물수수료

가. 발생금액 : 1,470,770 원(총부과금액(공용부포함) 1,548,180원 5% 부가대행수수료 77,410원 수입)

나. 용역 업체 : 광신 (용인시 지정업체)

다. 세대별 배출량 측정하여 부과

세대당 총 배출량 22,634.1kg 금 액 : 1,533,300원 (공용부 제외)

17. 장 기 수 선 총 당 금

가. 월 적립 금액 : 31,220,760원 (예산 374,649,120원/12개월 분할부과)

31,220,760 [발생금액] ÷ 185,550.70 [부과면적] = 168.26 원/면적

면 적 [㎡]	면적당단가	세대당 부과	세대수	부 과 액	비 고
112.130	168.26	18,870	396	7,472,520	
139.023	168.26	23,390	330	7,718,700	
165.849	168.26	27,910	288	8,038,080	
197.938	168.26	33,310	240	7,994,400	
합 계			1,254	31,223,700	2,940

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

월 일	사 용 내 역	입 금	출 금	비 고
	전 월 이 월	3,152,356,523		
11월 11일	적산열량계 구입	-	3,211,560	근원기업
11월 25일	제1기계실 고층부 온도조절밸브 긴급수리비	-	990,000	지멘스
11월 30일	11월분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31,220,760		
	만기예치 이자	-		
입금계	31,220,760	출금계	4,201,560	11월 30일 잔액 3,179,375,723

18. 세 대 비 품 교 체 비

아답타 교체외 54건 : 1,222,100 원 (교체의망세대부과)

19. 휘 트 니 스 센 터 이 용 료

가. 부과 방식 : 사용자 원칙에 의한 희망 부과

나. 산정기간 : 2019. 11. 01- 11. 30 신청분

다. 신청(이용) 내역

구 분	회원수	부 과 금 액	비 고
등 록 회 원 (외부인포함)	19	2,955,000	이체납
	63	4,920,000	부과분
소 계	82	7,875,000	
등록 해지(취소) 회원	-	-130,000	충당금에서 대체
합 계		7,745,000	

라. 휘트니스 수익 및 운영충당금 내역

순위	지 출 내 역	당월 수익.지출 금액	잔 액	비 고
1	전월 충당금 잔액		10,357,089	
2	10월 휘트니스센터 관리직원 급여	-3,698,551		
3	휘트니스센터 부속물(락카)수입	-189,000		위탁업체수입 (90%)
4	센터 내 소모품 구입비	-134,490		
5	보안시스템 월 용역비	-157,500		911무인경비시스템
6	센터 이용 프로그램 이용료	-33,000		' 터치짐 '
7	세탁비(운동복.수건)	-700,000		
8	정수기렌탈료및 공기청정기	-139,850		
9	인터넷이용료	-166,280		KT
10	도어락 구입비(추가분)	-64,500		
11	계	-5,283,171		
12	11월분 이용수입충당 적립분 대체	-4,386,730		
13	10월분 관리비 대체	-937,020	7,651,629	충당금 잔액(11.30현재)

■ 게시판 광고 수입현황 ■

번호	내 용	수 입	비 고
1	게시판 광고료 - 영어도서관	100,000	
2	게시판 광고료 - 한우리 카페	100,000	
3	게시판 광고료 - 에듀 플렉스	100,000	
4	게시판 광고료 - '리뉴얼 오픈'	100,000	
5	게시판 광고료 - 한양대 태권도	100,000	
6	게시판 광고료 - 아이플 수영	100,000	
7	게시판 광고료 - 권순하	100,000	
		700,000	

■ 승강기사용료 수입현황 ■

동 호	금 액	적 요	비 고
706-50, 804-100	600,000	8월이상 공사시 30만원 · 2세대	
합 계	600,000		

전 출 입 시		세 대 공 사 시				근 거
총 수 구 분		공 사 기 간				
15층이하	16층이상	1일-3일	4일-7일	장기공사시		
250,000	350,000	100,000	200,000	8-15일	300,000	
				16-23일	400,000	
				24일이상	500,000	
※ 승강기의 잦은 고장 및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어 부분 전출입시 1톤차량 이하만 무료, 1톤 차량 1대를 초과할 경우 15만원 사용료 부과 (2017.7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① 2009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② 2014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③ 2016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④ 2018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 화장실 개보수 및 화단철거시 승강기 사용료 10만원 부과						

※ 기타 화장실 보수 및 화단철거등 승강기사용료 10만원

■ 자생단체 지원 내역 ■

단 체 명	금 액	단 체 명	금 액
경 로 당	500,000	꽃을사랑하는모임 (꽃사모)월 지원금	300,000
휘트니스센터	300,000		